##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77

발의연월일 : 2021. 3. 26.

발 의 자:김예지·김성원·김선교

김희국 • 박성민 • 서병수

윤창현 · 지성호 · 최승재

홍석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 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
립) ①・② (생 략)	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3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
	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